

< 수시 공시 >

2015. 12. 18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 : 신영에센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2. 공시 내용 :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,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, 대상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함. (동시 해지 자투자신탁 : 신영에센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)
3. 해지 시행일 : 2016년 1월 20일 (수)
4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 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 공시
5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